

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26. 5. 27.>

지정표시판 표시방법(제6조제3항 관련)

1. 도안 모형

	또는	
산업통상부 신기술(또는 신제품) 지정기업		
○ 신기술(또는 신제품)명: ○ 지정번호: ○ 지정의 유효기간:		
○○○○ 주식회사		

2. 도안 요령

- 가.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, 세로 300mm로 한다.
- 나. “산업통상부 신기술 지정기업” 또는 “산업통상부 신제품 지정기업”이라는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.
- 다. “신기술(또는 신제품)명”, “지정번호”, “지정의 유효기간”이라는 글자는 신명조체로 한다.
- 라. 표시문자는 검정색으로 하되 지정마크의 색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다.
- 마. 지정제품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450mm, 세로 60mm의 보조표시판에 신기술(또는 신제품)명, 지정번호 및 지정의 유효기간을 적어 표시판 아래에 붙인다.
- 바. 표시판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기본으로 한다.